

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[별표 2의2] <개정 2018. 1. 18.>

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대상(제31조제2항제2호 관련)

1.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
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이 설치된 지역
3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